

의안번호	2204433
의 퇴 인	김원이 의원
회 답 일	2024. 12. 12.
추계번호	24A399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3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두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 8,000만원(연평균 1억 1,6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270	—	—	270	—	540	108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2	2	2	2	2	10	2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금운용 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1조 제3항)	6	6	6	6	6	30	6
합 계	278	8	8	278	8	580	116

주: 1.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¹⁾ 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7조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보호·지원위원회(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제1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2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위원은 ①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노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경험이 풍부한 3급 이상의 공무원, ④노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2)에 따른 산업별 연합단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제3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그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기술자문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8항)	의무규정
5	안 제8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의제)	「전기사업법」 제25조3)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은 폐지 예정일 2년 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4)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야 함	의무규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 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3)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9조 (정의로운 전환지원기금의 설치)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제1항)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⁵⁾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정부의 출연금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제2항)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안 제10조 (정의로운 전환지원기금의 용도)	기금은 ①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②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③대체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	의무규정
	안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⁶⁾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12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이 우수한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다른 시·도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3조제2항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이하 생략)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6)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의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
3	안 제6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나 시행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비 등이 발생하여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비용은 시·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현재 각 시·도가 시행계획에 담을 내용과 사업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소요 비용의 산출이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4	안 제7조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등)	○	—
5	안 제8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의제)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 지원 사업, 신산업 투자 유치 사업 등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참고자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다만, 현재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준용 가능한 기존 재정 투입 사례가 없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⁷⁾

7)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가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 지역은 이미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와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가 다른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9조 (정의로운 전환지원기금의 설치)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면서 기존 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안 제10조 (정의로운 전환지원기금의 용도)		
	안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되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용추계에 필요한 기금 사업의 예산 규모와 난이도 등을 알 수 없어 필요인력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제3항)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당 지급 비용 추계
7	안 제12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이 우수한 시·도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8	안 제13조제2항 (권한의 위임·위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되므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용추계에 필요한 위탁 사업의 예산 규모와 난이도 등을 알 수 없어 필요인력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1조제3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5조제1항⁸⁾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 안 제7조 제1항⁹⁾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되며, 안 제11조제3항¹⁰⁾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의 기금운용 심의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소요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 용역비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타 부처가 기본계획 수립 시 수행한 연구 용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¹¹⁾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전제하고 추계기간 동안 시행 당해 연도인 2026년과 3년 이후인 2029년에 각각 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8) 안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9) 안 제7조(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0) 안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1)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 제7조)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8명, 회의 횟수는 연 1회로 가정하며,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²⁾을 준용하여 2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안 제7조제2항¹³⁾에 따른 최대 정수인 25명으로 가정

－ 총 25명 중 제정안¹⁴⁾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위원(당연직 및 공무원 위원 등)은 ①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11명과 ②노동, 지역경제, 신·재생에너지산업 소관 공무원 6명을 합한 17명으로 가정하고,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위원(위촉직 및 민간 위원 등)은 위 17명을 제외한 8명으로 가정

* 지방자치단체장 11명은 현재 폐지 및 전환 계획이 수립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7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7명)과 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4명)로 가정¹⁵⁾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 3급 이상의 공무원 6명은 정부가 운영 중인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¹⁶⁾”의 정부측 참석자를 참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및 지역경제정책관, 고용노동부

12)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13) 안 제7조(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등) ②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4) 안 제7조(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등) ③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노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경험이 풍부한 3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노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별 연합단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의 사람

15) 인천광역시(시장, 옹진군수), 충청남도(도지사, 당진시장, 보령시장, 태안군수), 경상남도(도지사, 사천시장, 하동군수), 강원도(도지사, 동해시장)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안 제2조제3호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 외에도 인접 지역을 포함하나, 인접 지역의 경우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16) 석탄발전 폐지 절차와 이로 인해 지역경제, 고용,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로, 정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발전5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2.21.),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에 정부·지자체·민간 머리 맞대”

노동시장정책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전환국장,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활력국장,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정

- 제정안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기본계획(3년 주기) 수립 시 관할 구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 횟수는 연 1회로 가정
- 위원회의 수당 지급 대상 위원 수,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7조제8항¹⁷⁾에 따른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경우 설치 개수 및 위원회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 (안 제11조제3항)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8명, 회의 횟수는 연 3회로 가정하며,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25만원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정수·구성 및 회의 횟수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타 부처 소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빈도를 참고하여 가정¹⁸⁾
 -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등
 -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수,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17) 안 제7조(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등) ⑧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그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기술자문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8)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사례

위원회명	위원정수(명)			회의 개최실적(회)
		당연직	위촉직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10	3	7	2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10	3	7	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20	10	10	6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10	6	4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	15	7	8	2

주: 회의 개최실적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실적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2023.8.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및 타 부처가 수행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의 평균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2026년·2029년에 각 2억 7,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 4,000만원(연평균 1억 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소관부처	실시연도	예산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0	8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	2020	460
평균			27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270	-	-	270	-	540	1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촉직 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0만원(연평균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촉직 위원 수(8명) × 회의 횟수(1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200만원

[표 4]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2	2	2	2	2	10	2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1조제3항)

□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촉직 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000만원(연평균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촉직 위원 수(8명) × 회의 횟수(3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600만원

[표 5]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안 제11조제3항)	6	6	6	6	6	30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비용은 각각 유사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현재 수립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전환 계획을 바탕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단위: 용량(MW), 발전량(GWh)]

발전소명(지역)	대수	용량	호기	용량	준공	호기	용량	준공	발전량('23)
삼천포화력(경남)	4	2,120	#3	560	'93	#5	500	'97	11,278
			#4	560	'94	#6	500	'98	
영흥화력(인천)	6	5,080	#1	800	'04	#4	870	'08	22,174
			#2	800	'04	#5	870	'14	
			#3	870	'08	#6	870	'14	
여수화력(전남)	2	669	#1	340	'16	#2	329	'11	3,193
보령화력(충남)	6	3,050	#3	550	'93	#6	500	'94	15,990
			#4	500	'93	#7	500	'08	
			#5	500	'93	#8	500	'08	
신보령화력(충남)	2	2,038	#1	1,019	'17	#2	1,019	'17	11,704
태안화력(충남)	10	6,100	#1	500	'95	#6	500	'02	28,163
			#2	500	'95	#7	500	'07	
			#3	500	'97	#8	500	'07	
			#4	500	'97	#9	1,050	'16	
			#5	500	'01	#10	1,050	'17	
하동화력(경남)	8	4,000	#1	500	'97	#5	500	'00	16,889
			#2	500	'97	#6	500	'01	
			#3	500	'98	#7	500	'05	
			#4	500	'99	#8	500	'05	
삼척그린화력(강원)	2	2,044	#1	1,022	'16	#2	1,022	'17	8,867
당진화력(충남)	10	6,040	#1	500	'99	#6	500	'06	27,197
			#2	500	'99	#7	500	'07	
			#3	500	'00	#8	500	'07	
			#4	500	'01	#9	1,020	'16	
			#5	500	'05	#10	1,020	'16	
북평화력(강원)	2	1,190	#1	595	'17	#2	595	'17	6,067
고성(경남)	2	2,080	#1	1,040	'21	#2	1,040	'21	12,247
신서천(충남)	1	1,018	#1	1,018	'21				3,523
강릉안인(강원)	2	2,080	#1	1,040	'22	#2	1,040	'23	9,985
반월열병합*(경기)	1	83	#1	83	'90				368
대구염색열병합*(대구)	1	73	#1	73	'04				0.7
SGC에너지*(전북)	1	114	#1	114	'08				1,962
새만금열병합*(전북)	2	303	#1	152	'15	#2	152	'15	2,376
금호여수열병합*(전남)	2	264	#1	119	'09	#2	145	'16	1,661
여수열병합*(전남)	1	48	#1	48	'10				358
구미열병합*(경북)	1	97	#1	97	'91				535
부산염색열병합*(부산)	1	19	#1	19	'93				16
김천열병합*(경북)	1	59	#1	59	'13				393
전북집단에너지*(전북)	1	19	#1	21	'92				106
상공에너지*(전북)	1	10	#1	10	'12				40
포천그린에너지*(경기)	1	170	#1	170	'18				1,338
동해화력(무)(강원)	2	400	#1	200	'98	#2	200	'99	1,876
삼척화력(강원)	1	1,050	#1	1,050	'24				-

주: *는 비중양급전(14대/1,259.2MW), (무)는 무연탄(2대/400M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단위: MW)

연도	전환 계획			
	발전설비	내용	이전 지역	설비용량
2025	태안#1	LNG 전환	구미	500
	태안#2	LNG 전환	여수	500
2026	하동#1	LNG 전환	안동	500
	보령#5	LNG 전환	보령	500
	보령#6	LNG 전환	함안	500
	삼천포#3,4	LNG 전환	(미정)	1,120
2027	하동#2,3	LNG 전환	하동	1,000
	삼천포#5	LNG 전환	(미정)	500
2028	하동#4	LNG 전환	하동	500
	삼천포#6	LNG 전환	(미정)	500
	태안#3	LNG 전환	공주	400
2029	동해#1,2	LNG 전환	미정	400
	당진#1,2	LNG 전환	(호남)	1,000
	태안#4	LNG 전환	(미정)	500
2030	당진#3,4	LNG 전환	용인	1,000
2031	하동#5,6	LNG 전환	용인	1,000
2032	태안#5,6	LNG 전환	용인	1,000
2033	—	—	—	—
2034	영흥#1,2	LNG 전환	(미정)	1,600
2035	—	—	—	—
2036	당진#5,6	LNG 전환	(미정)	1,000

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첨단산업 전력공급계획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